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03월 13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11월 0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제한없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자산운용

목 차

CONTENTS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1.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이 투자신탁과 같은 상장지수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이나, 이 투자신탁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전부해지 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

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 113 조에 따른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교지수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하는 ETF 가 아닌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액티브 ETF 로 비교지수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 투자할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로서 상장 이후 유동성공급자의 매수 및 매도호가 공급을 통하여 원활한 시장거래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나, 거래량 부족, 장중 괴리율 확대, 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매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매도할 경우 원하는 가격에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되며,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분배재원, 추적오차 등 운용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펀드 전체 손익과 무관하게 해당 재원 범위 내에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원금의 일부가 분배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분배금을 수령하더라도 투자신탁의 평가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이 원금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 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시 연 1 회 분배하는 경우와 비교해 세제상 불리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3.13.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코드 : EU878]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나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100% 이하로 국내 채권에 투자하며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자율 상승에 의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 변동 위험**,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는 **액티브 ETF 투자위험, 국내 주식에 50% 미만 투자함에 따른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한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므로 다른 일반 ETF에 비해 추적오차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추적오차발생위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핵심 위험에 대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국내 채권을 포함) 및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KRX)가 산출 및 발표하는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원활하게 추종하는 가운데, 비교 지수 대비 일정 수준의 초과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며, 투자대상자산 중 50% 미만은 코스닥150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약 50% 수준은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부문은 잔존만기 6개월 이하의 단기 국공채를 편입하는 구조의 비교지수를 추종하되, 운용과정에서 초과 수익전략을 병행하여 벤치마크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 주1)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액티브상장지수펀드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 추적오차 관리방안

(1) 운용본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2) 운용본부내 다양한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행합니다.

(3) 포트폴리오 관리: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4) 바스켓 구성종목 모니터링 및 사후적 추적오차 점검을 통해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 되도록 관리합니다.

(5) 매매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펀드 내 잉여 현금 관리에 유의합니다.

3)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의 유동성 부족, 거래정지, 환매중지 등의 다양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투자대상의 규모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투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내부 관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심각히 예견될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시 단계별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따라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동성 확보방안, 판매사 대응방안 등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사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투자비용

(2026년 3월 13일 기준)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630	0.001	-	0.630	65	132	204	357	812

*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도표의 총보수비용은 기타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 투자시 부담하는 총비용 예시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및 비용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보수(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포함)·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신규펀드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2026년 06월 02일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혼합채권형_국내,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table>
<tr><td></td><td>
<table>
<tr><th></th><th></th><th></th><th></th><th>기구수(개)</th><th>(억원)</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최근1년</th><th>최근2년</th><th></th></tr>
<tr><td>책임</td><td>김태수</td><td>1973</td><td>상무</td><td>9</td><td>1,313</td><td>-</td><td>-</td><td>44.72</td><td>22.03</td><td>25.5년</td></tr>
<tr><td>부책임</td><td>이광현</td><td>1992</td><td>과장</td><td>12</td><td>15,453</td><td>-</td><td>-</td><td>44.72</td><td>22.03</td><td>4.6년</td></tr>
</table>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td></tr>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원본
손실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td></tr>
<tr><td>주식 등 가격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이자율
변동위험</td><td>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td><td>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td></tr>
<tr><td>파생상품
투자위험</td><td>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td></tr>
<tr><td>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td><td>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경쟁매매를 통해 ETF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좌당 거래가격이 1좌당 NAV에 비해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1좌당 NAV와 일치하지 않는 ETF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td></tr>
</table>

괴리 위험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액티브상장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 "패시브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 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변경 및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추적하는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 종목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종목이 비교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하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혹은 비교지수 내 종목을 대체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운용전략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신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투자신탁의 상관계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ETF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

<table>
<tr><td></td><td colspan="3"><table>
<tr><td></td><td>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td></tr>
<tr><td>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재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td><td>환매 방법</td><td>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td></tr>
<tr><td>환매 수수료</td><td>없음</td><td colspan="2"></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산정 방법
-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시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td></tr>
<tr><td>과세</td><td colspan="3">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하나자산운용
대표전화 : 02-3771-7800, 홈페이지 : www.hanaam.com</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수익권의 총좌수 : 제한 없음</td></tr>
<tr><td>효력발생(예정)일</td><td>2026년 11월 03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a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1Q 코스닥 150 채권혼합 5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EU87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거나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사항 없음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의 총 좌수 및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방법 및 절차

증권시장을 통해 매입하거나, 법인투자자에 한해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청구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 단위로 가능)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가.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환금성 및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증권시장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나. 상장요건

1) 규모 요건 : 신탁원본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발행 수익증권 수가 10만 증권 이상일 것

2) 유동성 요건 : 지정참가회사가 1사 이상이며, 지정참가회사 중 유동성공급자가 1사 이상일 것

3) 자산구성방법:

(1) 증권의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할 것. 다만, 목표로 하는 지수가 단순평균인 경우에는 모든 종목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95이상
- 종목 수를 기준으로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100분의 50 이상

(2) 증권종목 이외의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하는 상장지수 펀드의 경우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는 종목을 100분의 95이상 편입할 것

(3) 위의 (1)또는 (2)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기 곤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제1항제4호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 또는 (2)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 이 경우 투자대상,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방법, 지수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
-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이하 "합성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이하 "액티브상장지수펀드"라 한다.)
-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자산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상장폐지 요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116조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이하 "상관계수"라 함)가 0.9 미만(다만,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함.

2) 이 투자신탁이 목표로 하는 지수를 산정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 회원이 없는 경우

4) 이 투자신탁의 모든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회원과 규정에 따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5) 합성상장지수펀드의 거래상대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규정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공신력있는 금융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규정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 규정에 따른 순자본비율이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0의2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순자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함
-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영업의 중단,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부도, 은행거래정지, 자본금전액 잠식, 회생절차 개시신청, 법률에 따른 해상 등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계약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6)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7) 이 투자신탁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상장법인이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며, 향후 증권시장의 필요에 따라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집합투자업자는 이 기준의 변경에 따라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파악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증권시장 관련 홈페이지(www.krx.co.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내용
상장시장명칭	한국거래소
상장(예정)일	투자신탁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장 예정
거래방법	증권시장을 통한 경쟁매매

주) 수익증권의 상장 이후 거래는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환금성이 크게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하나 1Q 코스닥 150 채권혼합 5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EU878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내용
2026 년 04 월 18 일	최초효력발생
2026 년 06 월 19 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상율→김태수)
2026 년 08 월 27 일	설정방식 변경
2026 년 10 월 16 일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 변경
2026 년 11 월 03 일	지수방법론 개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6 년 06 월 02 일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책임	김태수	1973	상무	25.5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2006.12.22~2015.08.21) -하나자산운용 ETF/퀀트솔루션운용실(2015.08.24~현재)
부책임	이광현	1992	과장	4.6년	- KB자산운용 AI퀀트운용본부(2021.11.01~2024.07.12) - 하나자산운용 ETF운용팀(2024.07.15~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혼합채권형_국내, %)			
				집합투자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김태수	1973	상무	9	1,313	-	-	44.72	22.03
부책임	이광현	1992	과장	12	15,453	-	-	44.72	2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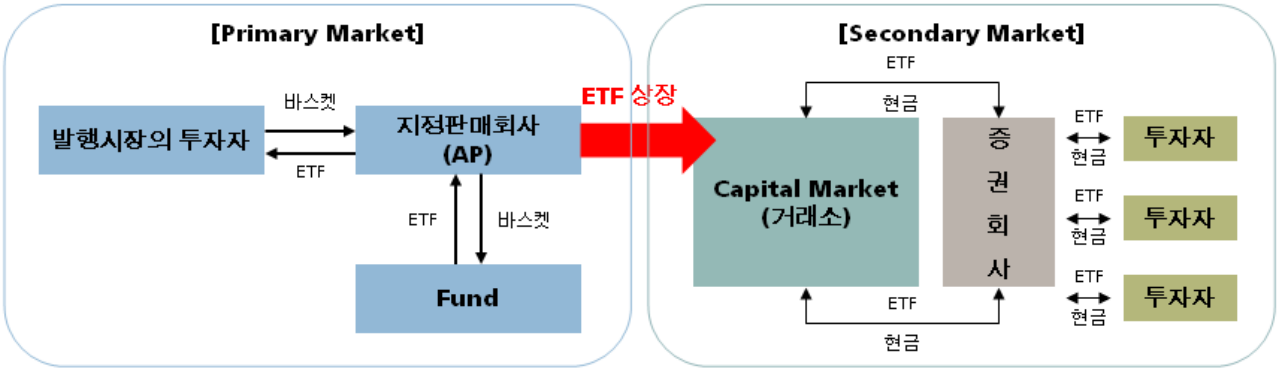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기준일 현재 동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나. 최근 3 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김상율	최초 설정일 ~ 2026년 06월 18일
김태수	2026년 06월 19일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이광현	최초 설정일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Primary Market (ETF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에서는 ETF 의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자산운용사와 지정판매회사(AP)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Secondary Market (ETF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에서는 발행시장을 통해 설정된 ETF 가 일반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을 통해서 일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국내 채권을 포함) 및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달성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채권	100% 이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권을 포함)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
②주식	50%미만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결합증권을 포함)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합니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⑥장내파생상품	10% 이하 (위험평가액 기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파생결합증권	10% 미만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⑧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⑨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⑩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⑪유동성 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투자대상 ①내지 ⑤의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주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ETF 의 경우) ETF 매매 편의성 증대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들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들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 를 매매

나.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다.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 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적용 예외
①이해관계인 투자제한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②동일종목 투자 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집합투자증권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 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단,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④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⑥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 투자대상 ⑥~⑩, 나.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법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때

- 집합투자규약 제4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가 산출 및 발표하는 "코스닥 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1좌당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이 비교지수의 변동률을 원활하게 추종하는 가운데, 비교 지수 대비 일정 수준의 초과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은 크게 두 부류로 구성되며, 투자대상자산 중 50% 미만은 코스닥 150 지수 구성종목에 주로 투자하고, 약 50% 수준은 채권관련 자산에 투자합니다. 채권부문은 잔존만기 6 개월 이하의 단기국공채를 편입하는 구조의 비교지수를 추종하되, 운용과정에서 초과 수익전략을 병행하여 벤치마크 대비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비교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 편입 자산 및 비중은 설정 규모와 자산 조달 여건 등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방안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한국거래소가 산출 및 발표하는 "코스닥150단기국공채 혼합지수" 추종을 위해 지수 구성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및 비중을 부분복제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코스닥150단기국공채 혼합지수)의 구성종목(예시)

(기준일: 2026.02.28)

코스닥 150 지수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에코프로	3.91%	이오테크닉스	0.76%	에스티팜	0.42%
알테오젠	3.58%	디앤디파마텍	0.69%	동진쎄미켐	0.40%
에코프로비엠	2.58%	메지온	0.67%	JYP Ent.	0.40%
삼천당제약	2.47%	로보티즈	0.66%	유진테크	0.40%
에이비엘바이오	1.72%	올릭스	0.63%	솔브레인	0.39%
레인보우로보틱스	1.44%	우리기술	0.57%	주성엔지니어링	0.38%
펩트론	1.32%	파마리서치	0.52%	엘앤씨바이오	0.38%
HLB	1.31%	케어젠	0.46%	비에이치아이	0.38%
리노공업	1.14%	HPSP	0.46%	하나마이크론	0.37%
리가켐바이오	1.06%	펄어비스	0.44%	오스코텍	0.37%
원익 IPS	0.89%	ISC	0.42%	태성	0.37%
보로노이	0.77%	에스피지	0.42%	이하 115 종목	-
합 계					50.00%

KIS 단기국공채지수	
종목명	비중
국고 01250-2603(국고 21-1)	6.82%
국고 01875-2606(국고 16-3)	4.88%
국고 03125-2606(국고 23-4)	4.36%
국고 03250-2603(국고 24-3)	3.43%
국고 05750-2603(국고 06-1)	2.78%
재정 2026-0010-0063	1.16%
재정 2026-0020-0063	1.16%
재정 2026-0030-0063	1.16%
재정 2026-0040-0063	1.16%
국민주택 1 종 21-03	0.89%
국민주택 1 종 21-05	0.87%
외평채권 02375-2605(25-5)	0.85%
국민주택 1 종 21-04	0.82%
국민주택 1 종 21-06	0.80%
외평채권 02375-2606(25-6)	0.79%
이하 224 종목	
합 계	50.00%

※ 상기 내용은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 구성종목 및 편입비중을 보여드리는 예시 자료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구성종목 및 비중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향후 이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내역(PDF)은 한국거래소 또는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지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ETF로, 성과 비교를 위하여 "비교지수"를 선정하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초과수익전략

초과수익전략 중 주요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설명
듀레이션 전략	정부정책, 수급여건, 대외요인 등의 분석을 통해 금리 수준과 향후 금리 변화를 예측하며, 금리 상승/하락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금리 민감도)을 조정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수익률 곡선 전략	동일 듀레이션 하에서라도 향후 금리 변화를 예측하여 포트폴리오 내의 장단기 채권의 구성의 포지션을 달리하여 보유수익 극대화하도록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2) 비교지수 : 코스닥150단기국공채혼합지수

(1) 산출기관: 한국거래소

(2) 산출기준일 및 기준지수: 2020년 1월 2일 기준 1,000.00pt

(3) 유니버스 :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각 하부지수의 유니버스에 따름

(4) 구성종목수 : 389개 종목(2026.02.28. 기준)

(5) 비중결정 방식 : 코스닥150지수 50%, KIS단기국공채지수 50%

(6) 종목교체기준(정기변경일) : 정기리밸런싱 및 수시리밸런싱은 하부지수 방법론에 따름

(7) CAP비율 : 비중이 유지되도록 매일 조정

하부지수에 대한 설명 : 코스닥150지수

구분	내용
유니버스 (선정 기준)	① 다음의 종목을 제외한 코스닥지수 구성종목 - 관리종목, 투자주의환기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 유동주식비율이 10% 미만인 종목 ②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은 제외함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 심사기준일 이전에 기존 구성종목의 기업분할로 인한 신설법인이 구성종목에 편입되거나, 신규상장 종목 중 심사기준일 이전에 특례로 편입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기존 구성종목인 경우 ③ 산업군 분류 제외 종목 제외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	① 1차선정(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 충족 여부) - 해당 산업군의 심사대상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하되, 누적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산업군 전체 시가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종목까지 선정

	- 다만, 일평균거래대금 순위가 해당 산업군 전체 심사대상종목수의 80% 이내(유동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제외 ② 2차선정(1차선정 후 다음의 기준 순차적용) - 기존구성종목이 유동성 기준을 충족하고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의 12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음 - 신규로 구성종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의 일평균시가총액 순위가 해당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수의 80% 이내이어야 함. 단, 산업군 기존 구성종목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예외 ③ 3차선정(2차선정까지 완료한 후 구성종목 수가 150종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 - 150종목 미만: 구성종목에 선정되지 않은 종목 중에서 산업군과 상관없이 일평균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추가선정. 단, 유동성 기준 충족 필요 - 150종목 초과: 구성종목에 선정된 종목 중에서 산업군에 상관없이 일평균시가총액이 낮은 순으로 제외 ④ 대형주 특례 ②~③에도 불구하고 ①에 해당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이 상위 50위 이내인 종목은 산업군별 비중, 유동성 등을 감안하여 구성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선정된 종목 중 일평균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을 제외. 이 경우 시가총액은 구성종목 심사기준일 기준 최근 15매매거래일의 일평균시가총액으로 함. ⑤ 소형주 제외 심사대상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닥시장 전체 보통주 종목 중 상위 300위를 초과하는 종목 제외
구성종목수	150개 종목(2026.02.28. 기준)
비중결정 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일)	·정기리밸런싱 - 매년 2회(KOSPI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수시 리밸런싱 - 특이사항 발생시 사유별 기준에 따라 구성종목에서 제외 또는 편입
CAP 비율	없음

하부지수에 대한 설명 : KIS단기국공채지수

구분	내용
유니버스 (선정 기준)	국고채(물가채 제외), 국민주택 1,2,3종, 지방채, 특수채(한전, 도로수자원, 예금보험채, AA- 이상)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	①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② 잔존만기: 6개월 이하
구성종목수	239개 종목(2026.02.28.기준)
비중결정 방식	시가총액 기준
종목교체기준 (정기변경일)	일별 리밸런싱

CAP 비율	없음

※ 이 투자신탁 및 비교지수에 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비고
지수관련 정보	www.krx.co.kr	지수산출기관
ETF관련 일반정보	https://1qetf.com	1Q ETF
PDF내역	http://data.krx.co.kr	한국거래소

주 1) 상기 비교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이 투자신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비교지수가 등장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일반적으로 ETF 는 지수 수익률 추종을 위하여 "기초지수"를 선정하며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반면, 지수 성과를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 는 성과 비교를 위하여 "비교지수"를 선정하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합니다. 따라서, 지수 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하는 ETF 의 "기초지수"와 지수 수익률 초과를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 의 "비교지수"에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적오차(Tracking Error) 발생 사유

(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권을 포함)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비교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다양한 보수 또는 비용(지수사용료 등) 등은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추적오차를 발생하게 합니다.

(3) 신탁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 투자신탁 분배금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익 분배는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에 부(負)의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포트폴리오 조정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구성종목의 교체 또는 비율변경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액티브상장지수펀드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 추적오차 관리방안

(1) 운용본부에서 운용정책, 자산배분, 투자전략을 수립합니다

(2) 운용본부내 다양한 투자의견을 집약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실행합니다.

(3) 포트폴리오 관리: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4) 바스켓 구성종목 모니터링 및 사후적 추적오차 점검을 통해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이 되도

록 관리합니다.

(5) 매매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고 펀드 내 잉여 현금 관리에 유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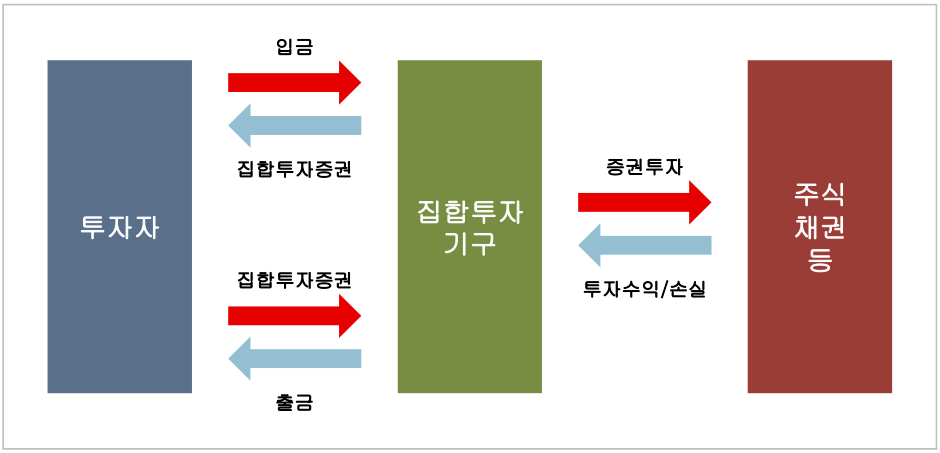
3)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의 유동성 부족, 거래정지, 환매중지 등의 다양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투자대상의 규모 및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투자대상의 특성에 맞게 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내부 관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심각히 예견될 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을 구축하고 있으며, 위기발생 시 단계별 체계적인 위기관리 대응체계에 따라 위기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동성 확보방안, 판매사 대응방안 등 위기관리대책을 수립 및 시행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사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운용상황,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권을 포함) 및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닥150단기국공채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환금성 제약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신탁재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라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액티브상장지수펀드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3조에 따른 액티브 상장지수펀드로 상장지수펀드의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은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 변동률과 비교지수의 일간 변동률이 유사 하도록 추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상장지수펀드(이하"패시브ETF"라 한다)와 달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식을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담당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이며 비교지수의 성과와 다른 성과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발생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적대상 지수와 유사한 수익률 실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패시브ETF가 아니라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하여 운용하는 액티브 ETF로 비교지수 대비 높은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ETF(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ETF는 제외)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ETF 비교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7 미만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ETF와 비교지수의 상관계수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와의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인 "코스닥150단기국공채혼합지수"은 하부지수로 "코스닥 150 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수로,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을 편입하는 것을 주식부문의 운용전략으로 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는 코스닥 종합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코스닥 시장의 대표지수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를 구성종목으로 하는 "코스닥 종합지수"와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150 지수"의 수익률과 "코스닥 종합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할 것이라 예상하는 투자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롤오버 (Roll-Over)위험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가지수선물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의 경우, 차기 선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 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롤오버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투자자금 회수곤란 위험	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 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ETF 상장폐지 위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ETF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익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ETF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ETF를 상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여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의 매매를 통한 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환금성 제약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유동성공급자가 시장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호가공백 또는 거래부진 등의 사유에 따른 실시간 매매 제약 등으로 인해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집합투자업자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이 투자신탁의 전부해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 보유종목 변경 시 iNAV 및 LP호가 미반영 위험	개장시간 중 액티브 ETF에 편입된 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당일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에는 신규 편입종목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며 유동성 공급자(LP)가 당일 장중에 제시하는 호가에도 신규 편입종목과 관련된 가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ETF의 실제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 거래가격과 순자산가치(NAV)와의 괴리 위험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경우 경쟁매매를 통해 ETF의 거래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1좌당 거래가격이 1좌당 NAV에 비해 높거나 낮은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1좌당 NAV와 일치하지 않는 ETF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 종목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지 않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며 비교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자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종목이 비교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 하는 코스닥 기업의 경우 혹은 비교지수 내 종목을 대체할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운용전략상 필요에 의하여 일부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일정 비중 이상으로 투자신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거나, 투자신탁의 상관계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액티브ETF 높은 비용부담 위험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서 부담합니다. 또한 상장수수료와 연 부과금 등 기타 운용관련 비용이 발생하며 거래 시 부과되는 매매수수료 등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일반적인 패시브 ETF와 달리 비교지수 대비 적극적인 초과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매매수수료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TF투자에 따른	이 투자신탁을 개인투자자가 한국거래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할 경우, 과세 대상이

과세위험	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과표 기준가의 증분과 매매이익 중 작은 값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5.4%입니다. 이러한 기간 보유 과세 체계에서는 매매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한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매매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매매건 별로 이익발생시점에서 계산한 과표의 합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기준을 넘어서면서 이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환매조건부 매도는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 계약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 환매 등에 따른 급작스러운 유동성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 매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말 등 단기자금시장에서 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경우 RP매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분배재원이 감소하거나 운용전략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익금이 분배금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배금 지급을 위해 투자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금 초과분배 여부는 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의 투자시점이나 매입가격에 따라 실제 원금과 수익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금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의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 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 분배가 지속될 경우 실제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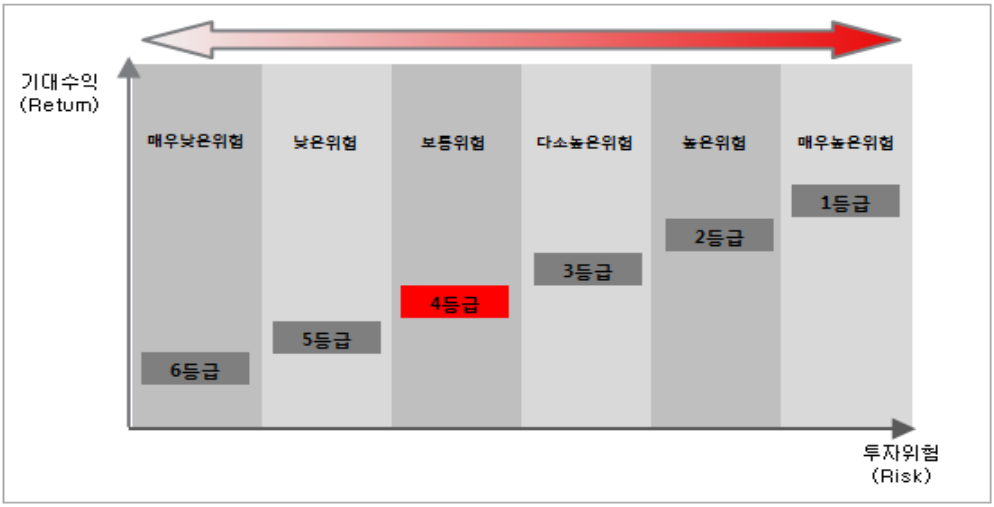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에 따른 위험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자산의 예: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및 매매•평가손익, 채권투자시 매매•평가손익 등 *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행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 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 위험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1) 이 투자신탁은 "코스닥150단기국공채혼합지수"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초과성과를 목표로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액티브상장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VaR)을 기초로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투자위험등급을 산정할 예정이며, 최대손실 예상액(VaR)은 과거 3년 일간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 환산 보정계수(√25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하나자산운용(주)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와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VaR)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설정 3년미만 펀드)	VaR*기준 (설정 3년 이상 펀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초과하는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등급	다소 높은	①고위험자산에 8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0%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

	위험	②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파생결합증권에주로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 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갖는집합투자기구	20%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 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0%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국공채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2)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6)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7)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9)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방법

(1) 증권시장을 통한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한국거래소에서 1좌 단위로 장중 매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시기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매를 통해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2) 설정을 통한 매입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단위로 받습니다.
- 설정에 따른 수익증권은 그 청구일(T일)로부터 3영업일(T+2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 수익증권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은 현금에 의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2) 설정단위 (Creation Unit)

설정단위란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상장지수투자신탁을 설정 신청하거나, 수익자가 상장지수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하는 단위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50,000좌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100,000좌, 150,000좌 등)로만 설정을 청구하거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 평가가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월전까지 한국거래소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하여 공시하고 공고할 것입니다.

<설정단위의 변경 예>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납입하여야 할 자산의 평가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단위 평가금액의 상승은 이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 · 해지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산금액 (Balancing Amount)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정산금액 최소화 방안
위와 같은 정산금액의 발생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에게는 예상할 수 없는 추가적인 비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 정산금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 보유 주식에서 발생할 현금배당 등을 그 전일자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 익일의 발생할 포트폴리오 재구성(re-balancing) 내역을 그 전일자의 납부자산구성내역 작성시 반영 등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동 정산 금액이 완전히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 또는 추가 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설정청구의 효력 등
-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투자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이 설정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투자자의 설정청구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설정청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을 하여야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설정청구의 취소는 설정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설정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상기 (2)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현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납현금 산출 : 설정청구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

-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함

(4) 상기(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5) 투자자가 상기 (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주의사항
상기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납부금등을 매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부금등의 매매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등을 말합니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함

(6)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로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 납부금등의 매매가액 정산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

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적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8) 상기 (1) 내지 (7)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 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9) 상기 (1) 내지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자신탁의 설정절차

[일자별 설정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설정청구		설정자금 납입, 정산금액의 정산 및 수익증권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설정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 납부금 등 이체(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투자자계좌에 수익증권 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 (거래소 등)	설정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거래소에 상장신청, 수익증권 발행(전자등록기관 전자등록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전자등록기관		설정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확정된 설정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납부금 등의 납입확인

(1) 설정청구일 직전 영업일 (T-1일)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설정청구일 (T일)

-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투자자계좌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하기 위한 자산(납부금 등)을 입고(입고하기로 사전 약정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고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자산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설정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이 만든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고, 동 입력 사항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하는 경우 설정청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설정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설정청구일에 청구된 설정청구분을 기초로 설정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하고, 이를 설정청

구한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설정일(T+2)까지 정산 및 결제하게 합니다. 이 경우 인수도명세서는 지정참가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별도의 승인 행위 없이 확정됩니다.

(4) 설정일 (T+2일)

- 집합투자업자는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전자등록기관에 추가 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에 수익증권의 일괄예탁을 의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합니다.
- 수익증권의 발행분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설정청구한 투자자의 계좌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입고하게 되고, 투자자는 그 즉시 한국거래소를 통한 수익증권의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정참가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하여 수익증권 입고를 설정일(T+2)일 한국거래소의 영업개시시점에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는 수익증권 입고 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1)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을 통해 장중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도에 따른 결제 절차는 일반적인 주식의 절차와 동일(매도일로부터 3 영업일에 매도대금 결제)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2)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 해지의 청구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해 설정단위인 50,000좌 또는 그 정배수로만 가능합니다.
- 해지에 따른 환매자산은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받게 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1)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효력 등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는 매 영업일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합니다. 수익자가 이 시한을 경과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환매청구는 그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합니다. 환매청구의 취소는 환매청구일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 시한을 경과하여 환매청구를 취소하는 경우 동 취소신청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가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5) 상기 (2) 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자가 상기 (2) 내지 (5)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수익자가 상기 (2) 내지 (6)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8) 상기 (7)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상기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수익자인 경우 환매자산 지급 방법
상기 (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한국거래소시장의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한 전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
- 수익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상기 (1) 내지 (9)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상기 (7)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1) 상기 (10)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2) 상기 (1)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상기 (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3) 수익증권의 환매절차

[일자별 환매절차 요약표]

	T-1	T	T+1	T+2
투자자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청구		수익증권 제출 및 환매자산 수령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에 환매청구	인수도명세확정 및 승인, 투자자 통보	신탁업자로부터 환매자산 인수 투자자계좌에서 수익증권인출 및 환매자산입고
집합투자업자	납부자산구성내역 통보(거래소 등)	환매청구내역 확인 및 승인		거래소에 변경상장 신청 투자신탁 일부해지(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말소의 전자등록)
전자등록기관		환매청구내역 취합 및 집합투자업자에 통보		실행된 환매내역 취합 및 통보
신탁업자				지정참가회사로 자산이체 및 이체내역 확인

(1) 환매청구일 직전 영업일 (T-1일)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Creation Unit)당 순자산가치와 동일하도록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여 익영업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거래소 및 전자등록기관에 공시 또는 발표합니다.

(2) 환매청구일 (T일)

-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개설된 수익자계좌에 수익증권의 입고(환매청구일에 수익증권을 매수 한 경우를 포함)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합니다.
- 지정참가회사는 당일의 환매청구분을 취합하여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입력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합니다.

(3)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T+1일)

- 이 투자신탁의 운영과 관련되는 기관인 집합투자업자, 지정참가회사, 전자등록기관은 환매일(T+2)에 결제하여야 할 인수도명세를 확정합니다.

(3) 환매일 (T+2일)

- 집합투자업자는 당일 확정된 인수도명세를 기초로 전자등록기관에 변경상장신청을 합니다.
-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납부금 등을 인수도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로 자산을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환매청구한 수익자의 계좌로 자산을 입금합니다.

4) 설정·환매시 자산의 이체 방법

(1)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와 신탁업자가 설정 또는 환매에 따라 자산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입·출고에 의한 설정·해지는 불가합니다. 다만, 법규상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금전 납입 방식의 수익증권 설정·해지의 경우 한국은행망을 통한 대금결제를 사용하며 지준일 등 특별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에는 직접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지정참가회사의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집합투자업자의 설정 또는 환매에 대한 승인, 기타 설정 또는 환매 관련 사항의 통지, 확인 등의 업무는 전자등록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등록기관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투자신탁 설정 또는 환매의 요구, 승인, 통지 및 확인 등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당해 요구, 승인, 통지, 확인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구분	중도환매허용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환매가능여부	○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지정참가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지정참가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aam.com), 지정참가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ETF)]

매입 및 환매 거래시 기준

$$\text{기준가} = \frac{\text{순자산 총액}}{\text{총 좌수}}$$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파생결합증권	발행회사 또는 가격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다만, 장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거래된 최종시가(해외거래소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집합투자재산평가규정에 따릅니다.

(2)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종료시각 차이에 따라 외화표시 자산의 기준시점 적용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명칭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상기의 수수료율 이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6 년 03 월 13 일 기준, 단위: %)

집합투자기구 명칭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주3)	증권거래비용주4)

하나1Q코스닥150채권혼합50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혼합]	0.594	0.001	0.020	0.015	0.630	미설정	0.630	-	미설정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6, 9, 12 월의 마지막일까지를 보수계산기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단,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직전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신탁계약 해지일까지 보수를 계산하여 해지일의 익영업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원)	포함되는 항목
증권거래비용	-	주식 매매수수료, 채권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거래수수료, 대차/대주 또는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 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수율 책정의 합리성과 운용 품질 영향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보수율 책정에 관한 사항은 집합투자업자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수율의 시장 경쟁성, 운용 품질 영향, 장기 수익률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보수율이 책정되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내부 "상품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1) 최저보수 책정이 운용품질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본 ETF 의 운용 품질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내부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ETF 전담 인력의 업무 배분을 최적화하고, 축적된 운용 경험과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본 ETF 는 유사 전략 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편입된 종목은 코스닥150지수의 주식과 압축된 채권 종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채권부문은 압축된 포트폴리오로 국공채 위주로 운용할 계획이므로, 높은 운용보수율을 요구하지 않아도 품질 저하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타 부문의 비용전가 여부
- 본 ETF 의 보수율 및 협력사의 보수율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책정되었으며, 특정 기관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 모든 계약은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체결되었으며, 협력사의 서비스 품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3) 보수율 책정으로 인한 추후 품질 유지 방안
- KRX 프리/애프터마켓을 통한 ETF 직접 거래 환경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업무부담이 확대된다면 담당 인력 및 시스템이 신속하게 확충될 예정입니다.
- 실제로 ETF 업무인력 증원 관련 비용은 이미 당사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의 품질을 단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경쟁력 유지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인 중요과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 유지에 필요한 자원 및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장기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집합투자업자(하나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aam.com/goods/publicNotice/publicNoticeList.jsp)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증권 등 자산의 예탁비용(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전자등록비용) 및 결제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수사용료 등의 지적재산권비용
-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2026년 03월 13일 기준, 단위: 천원)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예시(누적)

구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5	132	204	357	81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65	132	204	357	81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기준지표	보수 산정방식	한도 (%)	산출 주기	지급시기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①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이자수입 및 배당이익(④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②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③법 제238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④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2)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1)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과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합니다.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 다만,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대상 수익자 :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 분배금 :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합니다.

(3) 신탁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수익 및 배당 재원 등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투자신탁분배금으로 현금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운용목적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예외의 경우 :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은 예정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기에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된 이익금을 초과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당월에 발생된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 보유재산 매매를 통하여 기대했던 매매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당월에 발생된 이익금이 분배할 금액보다 작거나 없는 경우
-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2) 상환금 등의 지급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함)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 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 없이 당해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집합투자업자가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함)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합니다.

(3)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도한 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상환금 등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함)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함)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함. 이하 이조에서 같음)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 의거하여 2010 년 7 월 1 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 ETF(배당수익을 포함하는 Total Return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주식형 ETF 포함)는 보유기간과세 ETF 로 분류되므로 과세 적용대상이 됩니

다. 아래의 기준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투자자별 보다 자세한 ETF 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현금분배시 : ETF 결산시점에 분배금액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증분을 한도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분배금액은 분배부 과표기준가격에서 분배락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과 현금분배금액중 적은 금액입니다.
- 과표증분은 분배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② 매도시 : ETF 매도, 환매, 해지 및 해산 시점(이하, '매도시점')에는 보유기간동안의 과표증분과 매매차익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계산되며 과세유보금액이 있는 경우 과표증분과 매매차익 계산시 각각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과표증분은 매도시점의 과표기준가격에서 매수시점의 과표기준가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유보금액은 분배금액에서 결산시점의 과표증분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계산됩니다.
-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나의 계좌내에서 동일한 ETF 를 2 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수량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여 매수 과표기준가격으로 산정합니다.

③ 매수 과표기준가격 적용 기준 : 보유기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시행일 전에 매수하여 시행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를 매수 과표기준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매수시 과표기준가가 시행일의 과표기준가보다 높은 경우 매수시 과표기준가를 적용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신규설정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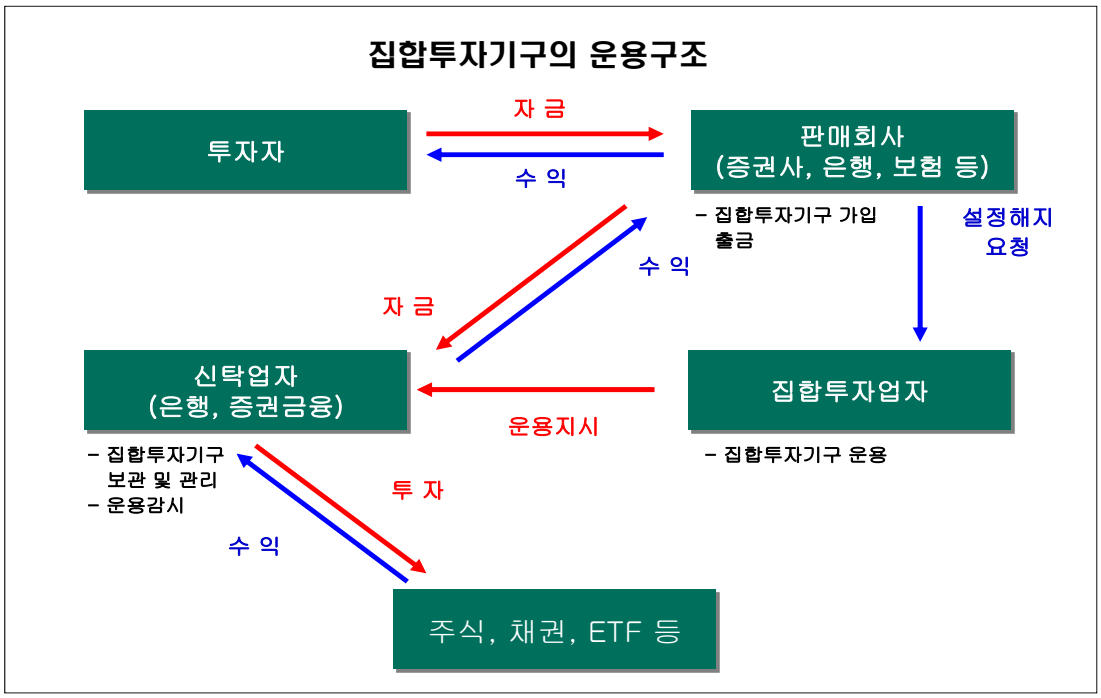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신규설정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신규설정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02-3771-7800, www.hanaam.com)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 설립(대한투자증권㈜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23.10.27 하나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억
주요주주현황	하나증권㈜

나. 주요업무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5.12.31	24.12.31	항 목	25.12.31	24.12.31
현금및예치금	31,596	39,181	영업수익	35,711	30,873
유가증권및대출채권	77,150	35,762	영업비용	27,886	23,970
유형자산및기타자산	4,422	10,266	**영업이익**	**7,825**	**6,903**
자산총계	**113,169**	**85,209**	영업외수익	263	1
기타부채등	8,753	8,702	영업외비용	62	51
예수부채	21,800	-	-	-	-
부채총계	**30,553**	**8,702**	**경상이익**	**8,026**	**6,853**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1	173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37,045	31,333	법인세	2,026	1,482
자본총계	**82,615**	**76,506**	**당기순이익**	**6,000**	**5,371**

라. 운용자산규모(2026년 03월 13일 기준 / 단위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31,473	10,791	72,087	29,622	215,718	3,248	527	3,720	2,558	369,744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공평동) (Tel : 1588-1599)
홈페이지	www.standardchartered.co.kr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 의 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8)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Tel : 6714-4600)
홈페이지	www.hanais.co.kr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030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02)2251-1300 -http://www.koreaap.com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NICE 피앤아이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여의도동)

	(02)398-3900 -http://www.nicepni.com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KIS 자산평가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02)3215-1400 -http://www.bond.co.kr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에프앤자산평가	(07805)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02) 721-5300 - http://www.fnpricing.com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이지자산평가	(0724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 빌딩 3층 (02)785-1410 - https://www.egap.co.kr - 설립일 : 2020.06.19 / 등록일 : 2021.05.18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해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신탁계약서 제37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단,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상금액: 신탁계약서 제37조제4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단, 신탁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3. 지급시기: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또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상기의 보수 지급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3) 및 4)의 사유로 임의해지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4)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 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 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5)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7)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

(8)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9)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hanaam.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운용전문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설정이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설정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에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선정절차 1. 정기적인 중개회사 평가를 통해 중개회사와 중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 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 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 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중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 5.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중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③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 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 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참고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참고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